

'04. 12. 20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—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2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상정일자 :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4. 12. 15 :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제안 이유

-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요소의 지원과 동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변경(제4조 제4항)
 - 인력동원지원반 →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
 - 재정지원반
 - 건설수송지원반 →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
 - 통신지원반 → 통신·전산지원반
 - 보급지원반 → 보급·급식지원반
 - (신 설) → 정부기능반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)

□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

-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지원 및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
-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(대통령 훈령 제28호)에 맞게 도의 통합방위지원본부조직중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통합해 “인력·재정동원지원반”으로, 건설수송지원반을 “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”으로, 통신지원반을 “통신·전산지원반”, 보급지원반을 “보급·급식지원반”으로 하고, 정부기능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요소의 지원과 동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변경(제4조제4항)

- 인력동원지원반 →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
- 재정지원반 →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
- 건설·수송지원반 →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
- 통신지원반 → 통신·전산지원반
- 보급지원반 → 보급·급식지원반
- (신 설) → 정부기능반

4. 의안전문 : 불 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6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·전산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,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④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수송지원반, 의료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</p>	<p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④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·전산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,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통합방위법

제9조(통합방위지원본부) ①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·읍·면·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.

②시·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한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
5.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
□ 통합방위법시행령

제13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)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
2.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3. 지역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

제17조(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) ①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운영한다.

②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.

③기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